

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보고

□ 추진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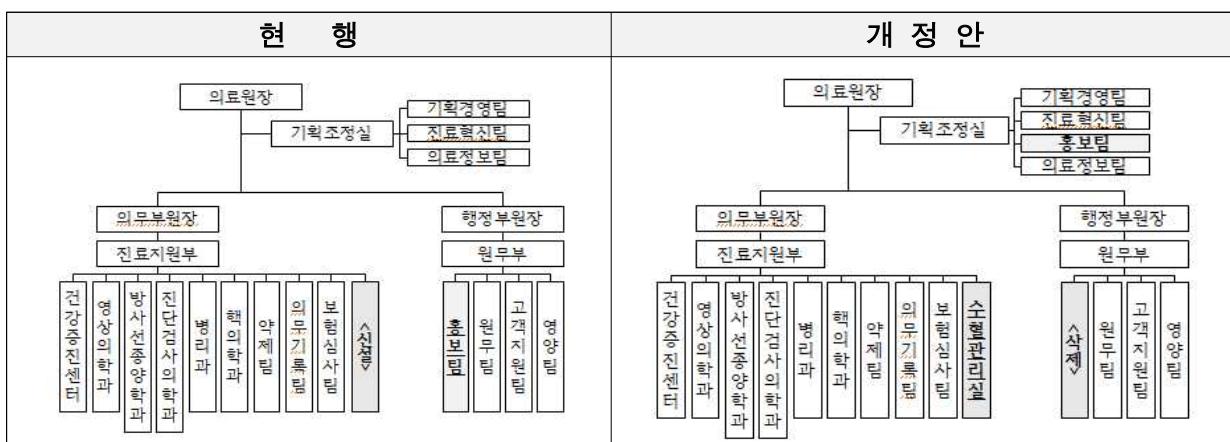
-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지도·감독 등)
- 서울의료원 정관 제40조(정관의 변경)

□ 추진 필요성

- 서울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('24.11월) 처분 요구에 따른 정관 개정
-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른 수혈관리실 의무 설치 조건 충족에 따른 조직 신설
- 진료정상화 위한 적극 홍보, 이미지 개선 등 홍보기능 강화 필요

추진내용

- 의료원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설정 내용 신설
 -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 정비
- 조직 신설 및 변경 : 수혈관리실 신설, 홍보팀 이동 배치
 - 수혈안정성 확보 및 환자중심 혈액관리체계 구축 위한 수혈 전담 조직 신설
 - 의료 전문성 연계, 전략적 병원 홍보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



향후 계획 (※ 추진과정에서 일정 변경될 수 있음)

- 서울의료원 이사회 정관 개정(안) 의결 : '25.12월
- 정관 개정 및 시행 : '26.1월

작성자 기획조정실장 : 김정희(☎2276-7015) 기획경영팀장 : 이미현(☎7037) 담당 : 박은용(☎7044)

붙임.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정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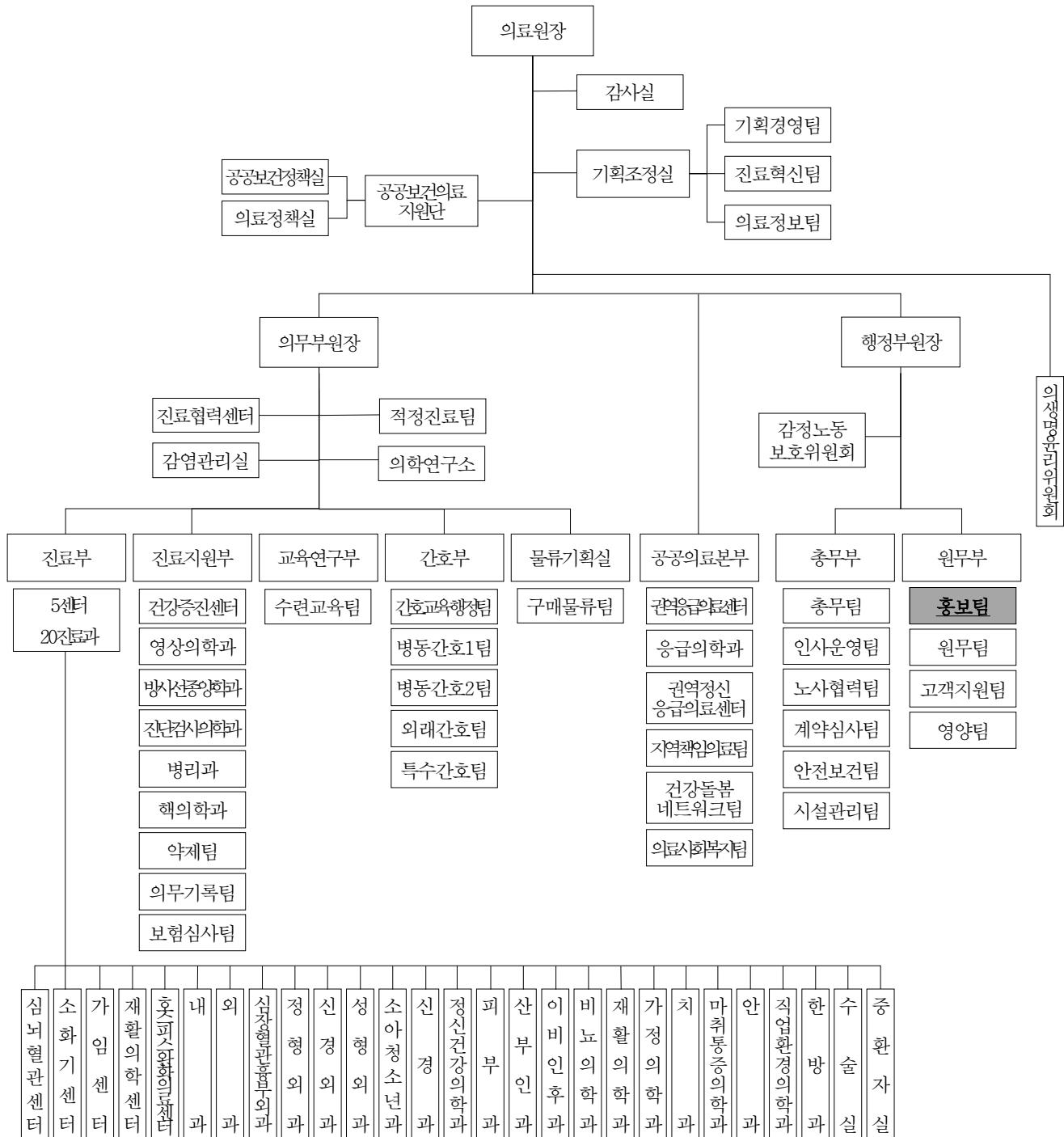
현 행	개 정 (안)
제15조(임직원의 겸직제한 등) ① 의료원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의료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	제15조(임직원의 겸직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
② 상임임원 중 의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원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의 진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	제3항으로 함
③ 의료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타의료기관의 협약에 따라 타의료기관의 직원을 의료원직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.	제4항으로 함

< 개정전 >

[별표 1]

기구표

(6부 6실 1본부, 9센터 26진료과 27팀, 1지원단, 1연구소, 2위원회)



< 개정후 >

[별표 1]

기구표

(6부 6실 1본부, 9센터 26진료과 27팀, 1지원단, 1연구소, 2위원회)

